

부가통신사업 등록제 개요 및 등록절차

□ 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법령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(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5.19>

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, 제45조 및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
2.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
3. 재무건전성
4.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설 2011.5.19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(신고 사항의 변경), 제24조(사업의 양도·양수 등), 제25조(사업의 승계), 제26조(사업의 휴지·폐지 등), 제27조(사업의 폐지명령 등)

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)

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1.14>
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)
2.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4>

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4>

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4>

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1.14>

1.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
2.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
5. 제공역무의 종류
6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
7. 등록조건

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4>

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"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. <신설 2011.11.14>

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. <신설 2011.11.14>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(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), 제31조(신고사항의 변경), 제32조(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), 제33조(사업의 휴지·폐지 등의 신고)

○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
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 (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-2)

구 분	등 록 기 준
1.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	<p>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,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,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 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</p> <p>나.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</p> <p>-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</p> <p>다.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저작권법」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2)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3)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<p>라.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·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</p> <p>마. 저장·전송된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(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), 수량, 일시, 대가 등에 관한 기록(서버 로그파일 등)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</p>
2. 인력 및 물적 시설	<p>가.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,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. 다만,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나.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·유해정보,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 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,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</p> <p>다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영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,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</p>
3. 재무 건전성	<p>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) 3억원 이상</p>
4. 사업 계획서	<p>인원·시설 등 일반 현황, 사업개요, 사업추진방향(전략), 매출방안,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</p>
5. 이용자 보호계획서	<p>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)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3)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)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)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·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· 불법복제물 복제자·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·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, 제재 내용, 소요기간,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<p>나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</p>

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

구분	처리기한	구비서류
신규 등록	30일	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. 설립예정 법인 포함) 3.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. 사업계획서 1부 5.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
변경 등록	7일	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제공역무의 종류,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(역무 변경 시) 4. 자본금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양도·양수 상속·합병	즉시	1. 양도·양수, 상속·합병 신고서 2. 양도·양수, 상속, 합병 계약서 사본
휴지·폐지 법인해산	즉시	1. 휴지, 폐지, 해산 신고서 2. 이용자에게 휴지·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
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구비서류

○ 등록 기관 :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8개 지방 전파관리소(서울,부산,광주,강릉,대전,대구,전주,제주)
방송통신서비스과

○ 구비 서류

구비 서류	서식 다운로드	비 고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	링크(별지5호)	
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(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)서	링크(별지8호)	
별정(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)통신사업 양도·양수 신고서	링크(별지9호)	
별정(부가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)통신사업 합병 신고서	링크(별지10호)	

□ 벌칙 조문(징역 또는 벌금형)

벌칙 내용	위반 행위(전기통신사업법)	해당 법조문
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	○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	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

※ 기타 벌칙 및 과태료, 행정처분 등의 법규는 부가통신사업 항목과 동일함.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 설명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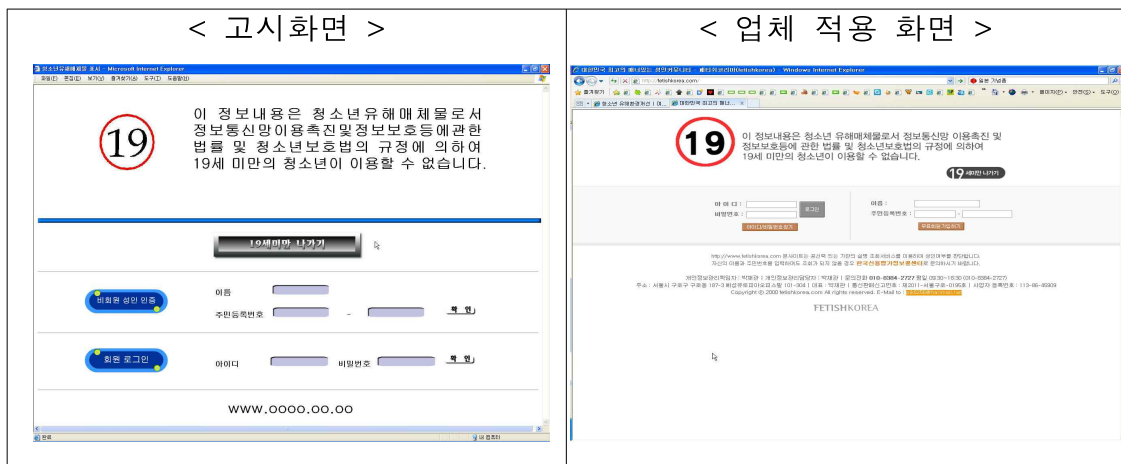
(본 설명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-2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)

1. 기술적조치 실시계획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,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,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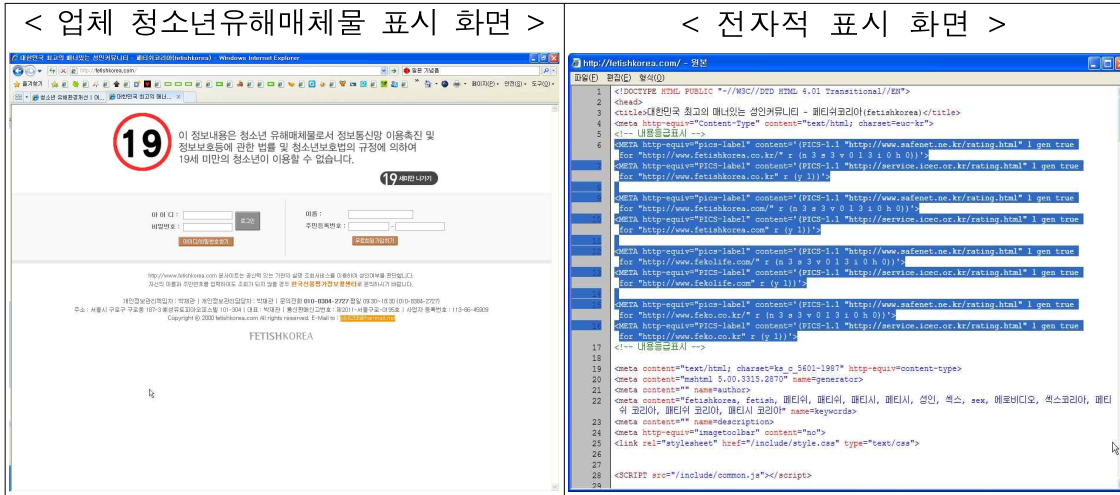
(1)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광고의 표시에 관한 기술적 조치

- **증빙자료①**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른 「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」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제출
- **증빙자료②** : 「한국정보인증」 등 공인 실명인증업체와의 실명인증 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
- **증빙자료③** :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 서비스 내용(메뉴 등)에 접근 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화면이 고시 내용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홈페이지 캡처 화면(컬러)을 제출



- ※ 1.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,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.
- 2.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/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.
- 3. 기타 문자·영상·음향·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.
 - 가.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
 - 나.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
 - 다.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
 - 라.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

- **증빙자료④** : 사업자 홈페이지의 성인서비스에 접근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 캡처화면(컬러)을 제출



※ 전자적 표시 여부 확인은 밑줄부분(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URL) 확인
 <META http-equiv="PICS-label" content="(PICS-1.1 "www.safenet.ne.kr/rating.html" I gen true for "http://fetiskorea.com/" r (y 1))">

(2)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

- o **증빙자료⑤와⑥** :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및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 계약서 사본 제출

- 해당 계약서 내 시스템 작동 및 필터링 기능(97%이상)이 포함

※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: 청소년 유해정보를 키워드, 해쉬값, 특징기반으로 음란물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(약 97%이상 차단시 유효)

(3)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

- o **증빙자료⑦** :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, 정보통신설비보안 등 정보보호 지침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아래 표의 내용이 포함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제출

2. 기술적 보호조	2.1. 네트워크 보안	2.1.1.	▶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, 주요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
		2.1.2.	▶ 무선랜서비스,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, 데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
		2.1.3.	▶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,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·운영
2.2.	2.2.1.	▶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	

치	정보통신 설비 보안 2.2. 정보통신 설비 보안	웹서버 보안	설치
		2.2.2. DNS서버 보안	▶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▶ 설정파일 백업 실시
		2.2.3. DHCP서버 보안	▶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▶ 설정파일 백업 실시 ▶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·관리
		2.2.4. DB서버 보안	▶ 내부망에 설치 ▶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
		2.2.5. 라우터/스위치 보안	▶ ACL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
		2.2.6. 정보보호시스템 보안	▶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▶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(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)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(월 1회 이상)
		2.2.7. 취약점 점검	▶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
		2.2.8.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	▶ 인가된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,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가 절차를 강화 ▶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
		2.2.9.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	▶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. 단,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 ▶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
		2.2.10. 로그 관리	▶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·관리(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)
		2.2.11. 보안패치 관리	▶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▶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·관리
		2.2.12. 백업 및 복구	▶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▶ 백업 담당자, 백업 및 복구 방법·절차·주기 등을 기록·관리

나.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

-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

(4) 악성프로그램 판별

- **증빙자료 ⑧** :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이 포함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제출
-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 검사, 주기적인 갱신, 점검 여부
 - **증빙자료 ⑨** :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선스 구매 영수증 사본 및 동 소프트웨어를 현행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와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PC 화면 캡처 사본 제출

- 다.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
- 1) 「저작권법」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
 - 2)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
 - 3)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

(5) 「저작권법」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

- **증빙자료⑩** : 검색어 기반 필터링, 해시기반 필터링, 특징기반 필터링, 기타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 발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내용이 포함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제출

※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

- 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, 배포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

- **증빙자료⑪** :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「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확인서(특징기반필터링)」 및 「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이용계약서」를 각각 제출

-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

- **증빙자료⑩의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내용에** 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할 때 인증기술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, 해당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되게 하고 있는지 확인

※ 기술적 조치 온·오프 스위치, 응답지연 및 오류로 미회신시 미차단 설정 등을 하지 않을 것

- 해당 기술을 모든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

- **증빙자료⑩의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에** 업로드/다운로드 시도 시 미인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모든 단계, 즉, 해시기반 필터링→ 특징기반 필터링 단계까지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

- **증빙자료⑩의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에** SW/HW 구성도(기술적조치가 포함된 HW와 미포함된 HW로 구분)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

라.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·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

(6)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·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

-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내용에 전송자를 식별·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

※ 전송자 식별 확인 정보는 변경 가능하지 않는 회원 ID나 전송자의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말하며, 회원 ID와 연계된 닉네임은 변경 가능하여 전송자 식별 확인정보로 볼 수 없음

마. 저장·전송된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(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), 수량, 일시, 대가 등에 관한 기록(서버 로그파일 등)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

(7)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의 내용에 저장·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의 목록, 수량, 일시, 대가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·보관하도록 하는 아래의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

-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버 로그파일 정보를 보관하는 계획

< 로그파일로 저장해야 할 기록의 종류 >

구 분	종 류
복제·전송 내역 정보	복제·전송 고유 번호, 게시물 번호, 제목, 업로더 아이디(ID)·아이피(IP), 다운로더 아이디(ID)·아이피(IP), 다운로드 대가(판매가격), 업로더 대가(지급액), 제휴 구분(제휴/비제휴), 결제방법(정액제, 캐시 등), 제휴사 지급액(제휴 콘텐츠일 경우), 다운로드 일시(거래일시)
게시물 내역 정보	게시물 고유 번호, 게시물 번호, 제목, 업로더 아이디(ID)·아이피(IP), 다운로드 대가(판매가격), 제휴 구분(제휴/비제휴), 업로드 일시, 다운로드 수(누적)

- 해당 기록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할 수 있는 계획 포함 여부 확인

2. 인력 및 물적 시설

- 가.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,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. 다만,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.
- 나.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·유해정보,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,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
- 다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,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

○ 저작권·청소년·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

- **증빙자료 ⑫** : 저작권·청소년·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하고 공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☞ 품의문서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 등

※ 지정된 책임자의 이름, 소속, 이메일, 연락처(전화번호)를 공표

· 인터넷 홈페이지(첫화면 최하단 중앙)

· 점포, 사무소에 공고 및 비치, 간행물, 소식지 등에 지속 게재

○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확보

- **증빙자료 ⑬** :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명부 1부

※ 근로기준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2인 이상(3교대 기준 최소 6인 이상)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**확인**

※ 명부에 각 요원에 대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소속, 이메일,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**확인**

※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업로드, 또는 공유 계정수 4,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 확보

○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구비 여부 확인

-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내용 확인으로 같음

3. 재무 건전성

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) 3억원 이상

○ 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)

- 증빙자료 ⑭ 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(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,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 등)

※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하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

4. 사업 계획서

인원·시설 등 일반 현황, 사업개요, 사업추진방향(전략), 매출방안,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

5. 이용자보호 계획서

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

- 1)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
- 2)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
- 3)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
- 4)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
- 5)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
 -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
 -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
 - 불법복제물 복제자·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
 -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, 제재 내용, 소요기간,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

나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른 이용자보호 계획서 제출

※ 이용자보호 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

이용자 보호계획 내용	비 고
<p>○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에 대한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소속, 이메일,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	
<p>○ 저작권 위반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권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는가? -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보상 절차 및 이행계획이 포함되었는가? 	
<p>○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접수 및 처리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계획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· 모니터링 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자체 삭제처리토록 계획 ·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유해여부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 계획 	
<p>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,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,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는 조치(보안서버 설치 등)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? 	
<p>○ 서비스 약관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이 명시 -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이 명시 - 불법복제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제재규정 -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절차, 제재 내용, 소요 기간,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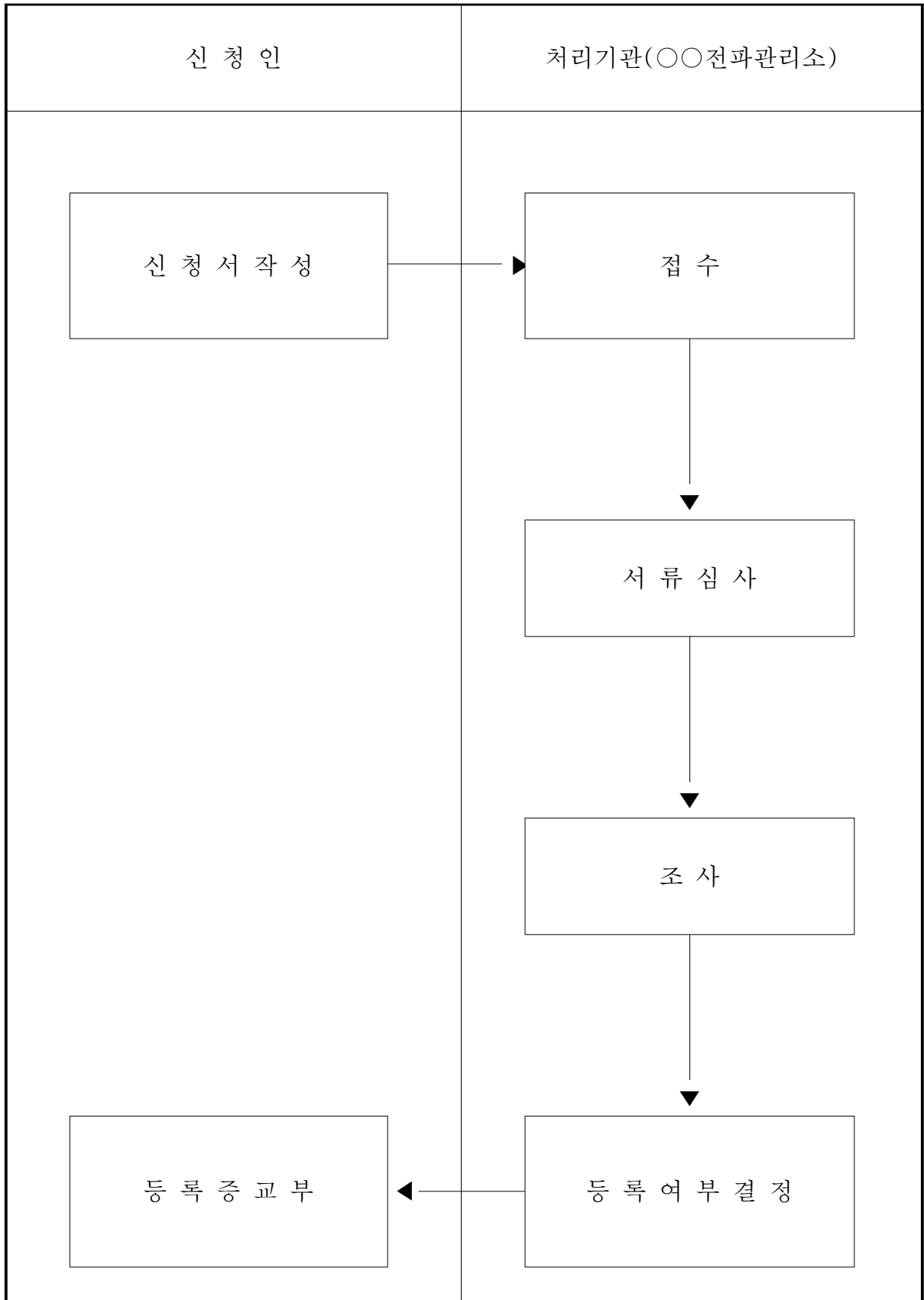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준비할 서류 목록

서류 목록	비 고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신청서(별지5호 서식)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등기부 등본	공무원이 「행정정보망」으로 법인등기부 조회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	법인(설립예정 포함)에 한함
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광고의 표시에 관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② 실명인증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③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④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캡처 화면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⑤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⑥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시스템 구축 계약서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⑦ 정보보호를 위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⑧ 악성프로그램 판별을 위한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⑨ 백신SW설치 및 업데이트, 검사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⑩ 저작권법 관련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⑪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확인서 (특징기반필터링) 및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이용 계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⑫ 저작권·청소년·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⑬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명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증빙자료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자료 ※ 단, 증빙자료 ①, ⑤, ⑦, ⑧, ⑩의 「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」는 하나의 계획서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1건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 가능. 이 경우 목차에 각각의 항목이 독립적으로 표기되어야 함.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서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용자보호 계획서	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상 호 또는 명 칭		전화 및 FAX 번호 (전화) (FAX)
	성 명(대 표 자)		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
	주 소(주된 사무소)		
자 본 금			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			
사 업 구 역			
사 업 용 주 요 설 비 의 개요 및 설 치 장 소			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			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	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)
	1. 정관(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,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)의 정관 1부 2.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. 사업계획서 1부 4.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		법인등기부등본 (1부) 없 음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

[별지 제8호서식]

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(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)서			처리기간	
			○ 별정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: 7일 ○ 부가통신사업 : 즉시	
신청(신고)인	상호 또는 명칭		전화/FAX 번호	(전화) (FAX)
	성 명(대표자)		주민(외국인)/ 법인등록번호	(주민/외국인) (법인)
	주 소 (주된 사무소)	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	변경(예정)일자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신청(변경신고)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(신고)인 (서명 또는 인)				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				
구 비 서 류	변 경 구 분	민원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)	
	상호·명칭 또는 주소	-	○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	
	대 표 자	-	○ 법인등기부 등본	
	제공 역무(서비스)의 종류	○ 제공 역무(서비스)의 종류·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	-	
	자본금(별정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)	○ 자본금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○ 법인등기부 등본	
본인은 이 변경등록신청서(변경신고서)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 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수수료
민원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